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	
	배포일시	2021. 8. 9.(월) / 총 13매(본문11, 참고2)		
<b>담당부서</b>	국토교통부	<b>건축안전과</b>	·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☎ (044) 201-4987, 4989, 4986	
		<b>건설산업과</b>	·과장 김광림, 나은중 ☎ (044) 201-3539	
		<b>건설정책과</b>	·과장 김근오, 사무관 최병길, 김종욱, 염광은 ☎ (044) 201-3507, 4579, 3512	
	행정안전부	기획재정부	<b>계약정책과</b>	·과장 손창범, 사무관 이영수 ☎ (044) 215-5214
			<b>재난안전 점검과</b>	·과장 황상규, 사무관 구은중 ☎ (044) 205-4240, 4242
			<b>재난관리 정책과</b>	·과장 조덕진, 사무관 심숙연 ☎ (044) 205-5110, 5121
			<b>안전개선과</b>	·과장 김정훈, 서기관 박범수, 사무관 이재훈 ☎ (044) 205-4210, 4223, 4226
<b>보도일시</b>		2021년 8월 1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0.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정부합동 <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> 발표

- [해체공사 안전강화]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
- [불법하도급 차단] 사후처벌 강화·시공사 간 상호 감시·견제 유도

-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,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「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」과 「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」을 마련하여 8.10일 발표하였다.
-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·감독 강화,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,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,
  -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,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하여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.

※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대책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주요내용

### [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]

#### 1.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

- ▷ (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) 해체계획서 **작성 자격기준 신설**
- ▷ (해체허가 대상 확대)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**해체허가 의무화**
- ▷ (해체심의제 도입) 해체허가 대상은 **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**

#### 2.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

- ▷ (상주감리 도입) 해체허가 대상의 **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**
- ▷ (감리 업무수행도 수시확인) 관련 서류 **수시 등록·확인 시스템 구축**

#### 3. 해체공사 현장관리·감독 강화

- ▷ (착공신고제 도입) 실제 **공사착수 여부,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 등** 확인
- ▷ (변경허가절차 도입)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시 **변경승인 의무화**
- ▷ (시공기록 의무화) 중요 해체작업 시 **영상촬영 의무화**

### [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]

#### 1. 정책수립·일선행정 연계체계 강화

- ▷ (지역건축안전센터) 지역건축안전센터 **설치 지자체 확대**
- ▷ (허가권자 권한강화) 현장 위반사항 적발 시 **조치권한 강화**
- ▷ (안전점검 의무화) 착공신고 수리 전 현장점검을 통한 **안전 확인 의무화**

#### 2.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

- ▷ (해체감리자) 최초교육 **의무화** 및 **교육시간 확대** 추진
- ▷ (해체계획서 작성자) 표준서식에 따른 **작성 교육 등** 실시
- ▷ (허가권자) 해체계획서 검토방법, 현장점검 방법 등 **교육 실시**

#### 3. 처벌기준 강화

- ▷ (처벌기준 신설)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**처벌기준 신설**
- ▷ (처벌수준 상향)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등에 대한 **처벌수준 상향**

### [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]

#### 1. 안전점검 확대·유도

- ▷ (현장점검 강화) 국가안전대진단, 우기·해빙기 점검 시 **해체공사장 점검**
- ▷ (재난관리평가 활용) 지자체의 재난관리평가를 **실시 및 결과 활용**

#### 2.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·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

- ▷ (안전신문고 기능강화) 해체공사 현장 위험요소 **신고 및 조치 실시**
- ▷ (해체공사장 안전정보 공개)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**대국민 공개**

##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

### 1.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

- ▷ (민간감리의 하도급 관리) 민간 발주자의 전문성 보완
  - 민간 주택·건축공사 감리가 **하도급 적법성 검토** 후 발주자에게 **보고 의무화**
- ▷ (기술인 관리강화) 능력을 넘어선 과다 수주 차단
  - 1억 이상 공사 계약 시 **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의무화**
  - 기술인 1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**현장 축소**(3개→2개)
- ▷ (기능인 관리강화) 위장계약 차단 및 불법 의심업체 추출 확대
  - 임금직불제·전자카드제 **조기확산** 및 키스콘 연계

### 2.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

- ▷ (특사경 도입) 이면·구두·위장계약에 대한 수사로 적발확률 제고
  - 국토부 및 지자체에 **특별사법경찰권 부여**
- ▷ (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)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대폭 상향
  - 제한대상 : 하도급사 → **원·하도급사, 하수급사**
  - 제한기간 : 최대 1년 → **최대 2년**
- ▷ (처벌강화)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대폭 상향
  - 처벌대상 : 원·하도급사 → **발주자, 원·하도급사, 하수급사**
  - 처벌수준 : 3년 이하 징역 → **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(사망사고 시 무기징역)**
- ▷ (등록말소 강화) 불법하도급 업체의 시장 퇴출 강화
  - 말소대상 : 하도급사 → **원·하도급사, 하수급사**
  - 말소기준 : **투 스트라이크 아웃(10년내 2회 위반)**  
**원 스트라이크 아웃(사망사고)**
- ▷ (징벌적 손해배상) 불법하도급의 비용 상향 및 피해자 보호 강화
  -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**최대 10배 배상**

### 3. 시공사 간 상호 감시·견제 유도

- ▷ (위약금청구권) 발주자·원도급사의 불법행위 관리·적발유인 제고
  - 발주자·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사에 **위약금 청구(10%)**
- ▷ (리니언시) 시공사간 상호신고 유도
  - 불법 가담업체 임직원의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**처벌 면제·감경**
- ▷ (시공실적 차감) 불법하도급의 이익 축소
  - 시공실적 허위 제출 시 2년간 실적 30% 차감 → **3년간 최대 60% 차감**
- ▷ (하자보증 무효화)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강화
  - 원도급사의 관리부실로 불법재하도급 발생 시 하도급사의 **하자보증 무효화**

##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

-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하여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「건축물관리법」을 제정하여 해체허가제도를 도입·운영하고 있으나,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.
  -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,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,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\*되었다.
    - \* 해체계획서 부실작성,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,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 적발
-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\*를 4차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실시하였으며,
  - \* 건축사, 구조기술사, 해체공사 시공업체, 국토안전관리원, 지자체 등 총 10명
  - 개선방안으로서 ‘해체공사 단계별 관리·감독 강화,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,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’ 방안을 마련하였다.
  - 특히,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 해체공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.

<b>목표</b>	<b>해체 공사 전 단계(허가-감리-시공)의 제도 이행력 강화</b>
<b>세부 과제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1. 해체공사 제도 단계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</b> - 해체공사 허가단계 내실화, 감리 업무수행도 제고, 현장감독 강화</li> <li><b>2.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</b> -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,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, 처벌강화</li> <li><b>3.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</b> - 안전점검 확대·유도 및 해체공사장 감시·안내체계 구축</li> </ol>

## 1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

□ 광주사고 사고원인 규명과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체공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'해체허가-감리-시공-현장관리'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

○ (해체계획서) 현재는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(건축사, 기술사 등)는 검토만 실시하여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이 크게 발생하였으며,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이루어 짐

⇒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(건축사, 기술사)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,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 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 의무화

○ (해체감리자) 상주감리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제한적이며, 감리 업무수행 적정성의 수시확인방법도 부재

⇒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하여 상주감리원 배치기준\*을 마련하고,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(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)을 개선

\* (감리자) 필수확인점 해체시 확인 / (감리원) 그 외 전체공사기간 내 1명 이상 배치

<해체공사현장 감리자 배치기준(안)>

해체범위	해체 감리자	상주 감리원 배치기준
해체 허가대상 (연면적 500m <sup>2</sup> 이상, 높이 12미터 이상, 3개층 초과)	건축사, 기술사, 엔지니어링 사업자	건축사보* 1명 이상 * 건축사·기술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
해체 신고대상 중 폭파공법,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 적용		건축사보 1명 이상
연면적 3,000m <sup>2</sup> 이상		건축사보 2명 이상

- (현장관리·감독) 착공신고제도가 부재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착수 여부를 알기 어려워 현장관리·감독 등의 실시가 곤란하며, 주요 공법 변경 등에 대한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하여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가 존재

⇒ 이에 따라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\* 도입과 더불어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,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 필요

- \* ①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, ②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, ③ 해체 작업자의 하도급 관련 사항, ④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시 변경된 해체계획서 제출



## ②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

□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일선 행정(지자체)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이행도를 제고하고, 현행 제도상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 여건 조성

- (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)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, 감리자만 최초 교육(16시간)을 받도록 권고

⇒ 지역건축안전센터\* 설치를 확대\*\*하고,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 강화

\* 지자체 조직으로 건축사·기술사 등 전문인력 포함 4~5인으로 구성·운영중

\*\*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의무화 ⇒ 허가수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 추가 고려계획

○ (처벌 강화) 현행 처벌수준이 낮거나 처벌기준이 부재

⇒ 또한,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\*하거나 신설\*\*하고,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

\* (상향)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 : 현행 과태료 5백만원 → 과태료 2천만원

\*\* (신설)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: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

### ③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

□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 수준을 제고하고, 국민들께서 해체공사장의 안전정보를 안내받으며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

○ 지자체의 현장점검 등의 자발적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의 수행에 소극적이며,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·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 부재

⇒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·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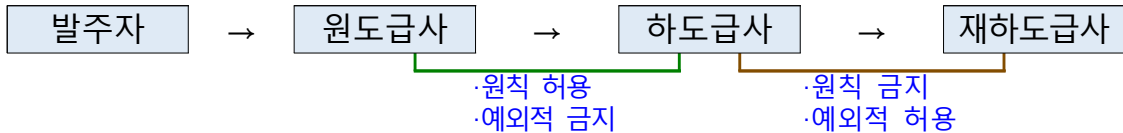
-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적극 활용\*

\*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

- 안전신문고 앱(App)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하여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며,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

##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

- 현행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되,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.



-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,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.
  -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, 광주 사고도 당초 3.3m<sup>2</sup>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%나 삭감된 3.3m<sup>2</sup>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.
- 이러한 불법하도급의 폐해에도 불구하고, 건설현장에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,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.
    -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 수수료 이익, 실적 쌓기, 인력·장비의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, 받는 업체는 별도의 수주경쟁 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.
    - 발주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나,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, 불법하도급을 관리할 전문성과 수단도 없다.
    - 인허가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이면·구두계약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 적발에 한계가 있고,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경미하다.
  -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,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,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.



- 이에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**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**, 불법행위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,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**과감한 종합 대책**을 마련하였다.
-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.
-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,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.

<b>전략</b>	<b>불법하도급의 「이익 &gt; 비용」 → 「이익 &lt; 비용」 전환</b>
<b>수단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1.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</b> - 감리 역할 확대, 기술인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 사전 차단</li> <li><b>2.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</b> - 특사경을 통해 적발확률을 높이고, 처벌대상을 발주자·원도급사·하수급사까지 확대,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</li> <li><b>3.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·견제 유도</b> - 리니언사·위약금청구권, 시공실적 차감 등 시공사간 상호견제 강화</li> </ol>

### ①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 강화

- (사전감리)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,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 없음
- ⇒ 민간 주택·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하여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, 발주자에게 보고
- (건설기술인 관리강화)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 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관리
- ⇒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

- (기능인 관리강화) 현장근로자는 비정규직·일용직이 많아 고용 계약관계 파악에 한계
- ⇒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하여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

## ②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 강화



- (특별사법경찰)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 권한 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
- ⇒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·적발
- (공공공사 참가 제한) 현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, 제한기간도 최장 1년
- ⇒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·하도급·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
- (처벌 강화) 처벌대상\*은 제한적이고, 처벌수준이 경미하여 불법 하도급 적발로 인한 비용이 적은 문제
  - \* 원도급자는 지시·공모가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되고,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
- ⇒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, 받은 업체, 발주자·원도급사까지 포함하여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
- (등록말소 강화)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(삼진아웃제)
- ⇒ 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(투스트라이크 아웃)하고,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·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

- (징벌적 손해배상제도) 현재 일반적 손해배상책임만 부여
  - ⇒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

### ③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

- (위약금 부과) 발주자·원도급사는 비용증가·행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
  - ⇒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, 계약해지권도 부여
- (리니언시·신고포상금) 불법하도급 당사자들은 신고시 함께 처벌우려로 신고에 소극적
  - ⇒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·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 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, 신고포상금도 도입하여 적극적인 내·외부 고발을 유도
- (시공실적 차감 확대) 현재 불법하도급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평가상 공사실적의 30% 차감
  - ⇒ 실적 차감을 3년간 60%로 확대

-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.
-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“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  <p>광공누리 공경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201-4989, 해체공사 안전강화) 또는 건설산업과 나은중 사무관(☎ 044-201-3539, 불법하도급 차단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#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과제별 담당 부서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<b>1.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</b>	
①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	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044-201-4989)
②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	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044-201-4989)
③ 해체공사 현장관리·감독 강화	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044-201-4989)
<b>2.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</b>	
① 정책수립·일선행정 연계체계 강화	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044-201-4989)
②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	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044-201-4989)
③ 처벌기준 강화	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044-201-4989)
<b>3.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</b>	
① 안전점검 확대·유도	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044-201-4989)
- 현장점검 강화	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구은중 사무관(☎044-205-4242)
- 재난관리평가 활용	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 심숙연 사무관(☎044-205-5121)
②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·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	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044-201-4989)
- 안전신문고 기능강화	행안부 안전개선과 이재훈 사무관(☎044-205-4242)
-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공개	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구은중 사무관(☎044-205-4242)

##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과제별 담당 부서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<b>1.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</b>	
①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	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(☎044-201-4897) 건축정책과 이채훈 사무관(☎044-201-4082)
② 건설기술인 관리강화	건설정책과 김종욱 사무관(☎044-201-4597)
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	건설정책과 김석원 사무관(☎044-201-3514)
④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	공정건설추진팀 김종률 사무관(☎044-201-3578)
<b>2.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</b>	
① 특별사법경찰 도입	건설산업과 나은종 사무관(☎044-201-3539)
②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	기재부 계약정책과 이영수 사무관(☎044-215-5214) 건설정책과 김종욱 사무관(☎044-201-4597)
③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	건설산업과 나은종 사무관(☎044-201-3509)
④ 등록말소 확대(삼진 아웃제 개선 등)	건설산업과 나은종 사무관(☎044-201-3509)
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	건설산업과 나은종 사무관(☎044-201-3509)
<b>3. 시공사간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유도</b>	
① 위약금 청구권 도입	건설산업과 나은종 사무관(☎044-201-3509)
②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제도 도입	건설산업과 나은종 사무관(☎044-201-3509)
③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	건설정책과 염광은 사무관(☎044-201-3512)
④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	건설정책과 염광은 사무관(☎044-201-3512)